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
|----------------------|--|
| 가. 제품명 | Contec EU bottles containing 70% Denatured Ethanol (LQ) |
|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 | FLIQ70DEEULQ |
| 제품 번호 | FBT170DE, SBT0570DEW, SBT170DEW, SBT170DEWS |
|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한 |
| 제품의 권고 용도 | 살생물제. 중요한 소독을 위한 병에 든 에탄올. |
| 사용상의 제한 | 전문가 전용 |
| 제조사/수입자/유통업자 정보 | |
| 제조사: | Contec Cleanroom (UK) Ltd. |
| 주소 | Unit 6A Wansbeck Business Park Rotary Parkway Ashington NE63 8QW - UK |
| 전화번호 | +44 (0) 1670 520 148 |
| 고객 서비스 : | |
| 핫라인 | +33 (0) 2 97 43 76 98 |
| 이메일 | SDS@contecinc.com |
| 긴급전화번호 | CHEMTREC으로 연락, 주간 또는 야간: +1 703 527 3887 (24시간) |

2. 유해성·위험성

| | | |
|---------------|---------------|------|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 |
| 물리적 위험성 | 인화성 액체 | 구분 2 |
| 건강 유해성 |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 구분 2 |
| 환경 유해성 | 분류되지 않음. |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위험

o 유해·위험 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십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십시오.

P280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대응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십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십시오/샤워하십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십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십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십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십시오.

저장

폐기

P501

지방/지역/국가/국제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알려지지 않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 식별번호 | 함유량(%) |
|---------|----------|-----------|----------|--------|
| 에탄올 | | 64-17-5 | KE-13217 | 66.5 |
| 물 | | 7732-18-5 | KE-35400 | 30 |
| 프로판-2-올 | | 67-63-0 | KE-29363 | 3.5 |

성분해설 모든 조성은 부피 퍼센트임.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눈을 다량의 물로 15분 이상 씻으십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해서 씻어 낼 것. 자극이 발생하고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를 물로 씻으십시오/샤워하십시오. 자극이 발생하고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라.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내십시오.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일반 지원 조치를 제공하고 증상에 따라 처치할 것. 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증상은 지연되어서 나타날 수 있음. 화상: 즉시 물로 씻어내면서 부상 부위에 붙은 천을 제외하고 옷을 벗길 것.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운송 중에도 세척을 계속할 것.
-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급성 및 지연된 심한 눈 자극. 증상으로 통렬감, 눈물, 충혈, 팽윤 및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음.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물 안개. 내알코올성 폼.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CO2).
 - 부적절한 소화제 고압 살수 시 화재가 확산되므로 고압 살수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하지 말 것.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보이지 않는 불에 의해 연소될 수 있습니다. 증기는 공기와 섞이면서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할 수 있음.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근처 지면의 발화원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 증기는 먼 거리에 있는 점화원으로 이동하여 역화할 수 있음. 화재 발생 시, 건강에 유해한 가스가 생성될 수 있음. 탄소산화물. 유기 화합물.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착용할 보호구 화재 발생 시 공기호흡기와 전신 보호복을 사용할 것.
 - 예방조치 화재 및/또는 폭발 사고 시 호흡을 흡입하지 말 것. 화염에 노출된 용기를 물로 식힐 것. 위험없이 처리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키십시오.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키십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 (인근 지역에서 금연, 성광, 스파크나 화염). 정화 작업을 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장비와 보호의를 착용할 것. 미스트/증기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피부, 눈, 및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할 것. 누출정도가 심각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8항을 참조할 것.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도, 수로 또는 지표로 배출하지 마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모든 점화원을 제거할 것 (인근 지역에서 금연, 흡광, 스파크나 화염). 누출물로부터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을 멀리하십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물에 섞일 수 있음.

대량 누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물질의 흐름을 멈추십시오. 가능한 경우 누출된 물질 주위로 도랑을 팠 것. 질석, 모래 또는 흙 등의 비가연성 물질로 제품을 흡수시킨 후, 후속처리를 위하여 용기에 수거할 것. 제품을 수거 후 누출 지역을 물로 세척할 것.

소량 누출: 흙이나 모래 또는 기타 불연성 물질로 흡수시키고 추후 처리를 위해 용기에 수거할 것. 흡착재질로 닦아낼 것. 잔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세척할 것.

절대로 옆질러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13항을 참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경고! 사용된 병은 부적절하게 폐기되거나 점화원 근처에 보관할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화염, 열원 또는 점화원 부근에서 취급, 저장 또는 개봉하지 말 것. 직사광선으로부터 물질을 보호할 것. 사용할 때에는 흡연하지 말 것. 방폭 처리된 전체 및 국소배기장치.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지침에 따라서만 사용할 것. 미스트/증기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피부, 눈, 및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기간 노출을 피하십시오.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열, 스파크, 화염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가연성 물질로부터 멀리하십시오.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일반적인 접합과 접지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정전기 형성을 방지하십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십시오. 단단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피해야 할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하십시오 (MSDS의 10항을 참조할 것).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한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한계, 산업안전보건법 "K-OSHA" 제106조

| 구성성분 | 종류 | 값 |
|-----------------------|---------------|----------|
| 에탄올 (CAS 64-17-5) | TWA | 1000 ppm |
| 프로판-2-올 (CAS 67-63-0) | STEL - 단기노출기준 | 400 ppm |
| | TWA | 200 ppm |

미국 ACGIH 한계 기준값 (TLV)

| 구성성분 | 종류 | 값 |
|-----------------------|---------------|----------|
| 에탄올 (CAS 64-17-5) | STEL - 단기노출기준 | 1000 ppm |
| 프로판-2-올 (CAS 67-63-0) | STEL - 단기노출기준 | 400 ppm |
| | TWA | 200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ACGIH 생물학적 노출 지수 (BEI)

| 구성성분 | 값 | 결정 요인 | 표본 | 샘플링 시간 |
|-----------------------|---------|-------|----|--------|
| 프로판-2-올 (CAS 67-63-0) | 40 mg/l | 아세톤 | 소변 | * |

* - 견본의 자세한 내용은 출처자료를 참고할 것.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방폭 처리된 전체 및 국소배기장치. 우수한 일반 환기가 사용되어야 함. 환기율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적용가능할 경우, 공정 인클로저, 국소 배기 환기 또는 공기 중 농도를 권장 노출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야 함. 세안장치 및 긴급샤워시설을 제공할 것.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 보호

만일 공학적 관리방법으로 공기 중의 농도를 권장 노출 기준(적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일부 국가는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하로 관리할 수 없을 경우, 허가된 호흡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유기 증기 카트리지가 및 전면 안면보호판이 장착된 화학물질용 호흡기 보호구. 호흡 보호 장비 공급자에게 확인하십시오.

o 눈 보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측면 보호판이 있는 보안경(또는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o 손 보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적절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권장되는 재료: 니트릴 고무/니트릴 라텍스 - NBR. 적합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장갑이 장갑 공급자에 의해 추천될 수 있음. 투과성, 파과 시간 및 특수 작업장 조건(기계적 변형, 접촉 지속 시간)에 대해 제조자가 제공한 정보를 참고할 것.

o 신체 보호

적합한 보호의를 착용하십시오.

위생대책

사용할 때에는 흡연하지 말 것. 물질 취급 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씻는 등 항상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작업복과 보호용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질명 Contec EU bottles containing 70% Denatured Ethanol (LQ)

964281 버전 번호: 02 개정일: 2026년 6월 22일 발행 날짜: 2023년 2월 14일

MSDS Korea

3 / 8

| | |
|-----------------------|--|
| 물리적 상태 | 액체. |
| 형태 | 액체. |
| 색 | 무색. |
| 나. 냄새 | 알코올-같은. |
|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
| 라. pH | 7 (에탄올) (20 °C (68 °F)) |
| 마. 녹는점/어는점 | |
| 녹는점 | -114 °C (-173.2 °F) (에탄올) |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78 °C (172.4 °F) (에탄올) |
| 사. 인화점 | 22.5 °C (72.5 °F) (에탄올 60%) |
| 아. 증발 속도 | 8.3 (에탄올) |
| 자. 인화성(고체, 기체) | 해당없음. |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폭발 한계 - 하한 (%) | 9 % (에탄올) |
| 폭발 한계 - 상한 (%) | 44 % (에탄올) |
| 카. 증기압 | 58 hPa (에탄올) (20 °C (68 °F)) |
| 타. 용해도 | |
| 용해도(물) | 물과 섞일 수 있는. |
| 파. 증기밀도 | 자료없음. |
| 하. 비중 | 1.03 (에탄올) (20 °C (68 °F)) |
|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해당 없음, 제품은 혼합물임. |
| 너. 자연발화 온도 | 400 °C (752 °F) (에탄올) |
| 더. 분해 온도 | ≥ 700 °C (≥ 1292 °F) (에탄올) |
| 러. 점도 | 자료없음. |
| 머. 분자량 | 혼합물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 |
| 기타 정보 | |
| 밀도 | 0.79 g/cm ³ (에탄올) (20 °C (68 °F)) |
| 폭발 특성 | 폭발성이 아님. |
| 동점도 | 자료없음. |
| 산화성 | 산화성이 아님.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 |
|--------------------------------|---|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 화학적 안정성 |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물질은 안정함. |
|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험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인화점을 초과하는 온도를 피하십시오. 피해야 할 물질과의 접촉.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것. |
| 다. 피해야 할 물질 | 산. 알칼리 금속. 암모니아. 히드라진. 과산화물. 강산화제. |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연소시 발생할 수 있음: 탄소산화물 및 기타 유기 물질.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 | |
|------------------------------|--------------------------------|--------------------|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
| o 호흡기 | 장기간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 |
| o 피부 | 장기적인 피부 접촉은 일시적인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
| o 눈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
| o 경구 | 섭취시 자극 및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 | |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 |
| o 급성 독성 (노출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급성 독성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
| 구성성분 | 중 | 시험 결과 |
| 에탄올 (CAS 64-17-5) | | |
| 급성 | | |
| 경구 | | |
| LD50 | 쥐 | 7000 - 11000 mg/kg |

| 구성성분 | 종 | 시험 결과 |
|-----------------------|----|----------------------------|
| 경피 LD50 | 쥐 | > 2000 mg/kg |
| 흡입 증기 LC50 | 생쥐 | 39 g/m ³ , 4 시간 |
| 프로판-2-올 (CAS 67-63-0) | | |
| 급성 경구 LD50 | 쥐 | 4710 mg/kg |
| 경피 LD50 | 토끼 | 12870 mg/kg |
| 흡입 증기 LC50 | 쥐 | 72.6 mg/l, 4 시간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장기적인 피부 접촉은 일시적인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호흡기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이 아님.
- 피부 과민성: 본 제품은 피부 과민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발암성: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IARC 단행본. 발암성에 관한 총평

프로판-2-올 (CAS 67-63-0)

3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제품이나 0.1%이상 함유된 성분이 변이원성 또는 유전독성을 나타냄을 의미하는 자료가 없음.
- 생식 독성: 본 제품은 생식 또는 발달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분류되지 않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분류되지 않음.
- 흡인 유해성: 흡인 유해성이 아님.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본 제품은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그러나 이는 다량 또는 잦은 누출로 인해 환경에 유해성을 갖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구성성분 | 종 | 시험 결과 |
|-----------------------|----------------------|--|
| 에탄올 (CAS 64-17-5) | | |
| 수생 급성 갑각류 | LC50 | Ceriodaphnia dubia 5012 mg/l, 48 시간 물벼룩 454 mg/l, 11 일 |
| 어류 만성 갑각류 | LC50 NOEC | 피라미류 13480 mg/l, 96 시간 Ceriodaphnia dubia 9.6 mg/l, 10 일 |
| 프로판-2-올 (CAS 67-63-0) | | |
| 수생 급성 갑각류 | LC50 | 물벼룩 > 10000 mg/l, 24 시간 |
| 어류 만성 갑각류 | LC50 EC50 NOEC | 피라미류 9640 mg/l, 96 시간 물벼룩 > 100 mg/l, 21 일 물벼룩 141 mg/l, 16 일 물벼룩 30 mg/l, 21 일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본 혼합물 내 성분의 분해성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음.

다. 생물 농축성

생물농축 잠재성이 낮음.

옥탄올/물 분배 계수 log Kow

에탄올 (CAS 64-17-5)

-0.31

프로판-2-올 (CAS 67-63-0)

0.05

라. 토양 이동성 높은 휘발성을 갖음, 빠르게 공기와 분할될 것임.

마. 기타 유해 영향 제품은 광화학 반응에 의한 오존 생성 가능성이 있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함유됨.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수거하여 재생하거나 밀봉 용기에 담아서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할 것.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국내 규정

KSSTDG

가. 유엔번호 UN1993

나. 유엔 적정 선적명 인화성 액체,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Limited Quantity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위해 등급 3

부수적 유해성 -

라. 용기등급 3

마. 환경유해성

해양오염물질 아니오

EmS F-E, S-E

바. 사용자에게 대한 특별한 취급 전에 안전 지침, MSDS 및 응급절차를 숙지할 것.

안전 대책

E1

P001,LP01

국제법규

IATA

A. UN number UN1993

B. UN proper shipping name Flammable liquid, n.o.s. (Ethanol, Isopropanol)

C. Transport hazard class(es)

Class 3

Subsidiary hazard -

D. Packing group II

E. Environmental hazards No

ERG Code 3H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Read safety instructions, MSDS and emergency procedures before handling.

IMDG

A. UN number UN1993

B. UN proper shipping name FLAMMABLE LIQUID, N.O.S. (Ethanol, Isopropanol), Limited Quantity

C. Transport hazard class(es)

Class 3

Subsidiary hazard -

D. Packing group II

E. Environmental hazards

Marine pollutant No

EmS F-E, S-E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Read safety instructions, MSDS and emergency procedures before handling.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설정되지 않음.

운송

운송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프로판-2-올 (CAS 67-63-0)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프로판-2-올 (CAS 67-63-0)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프로판-2-올 (CAS 67-63-0)

노출기준설정물질

에탄올 (CAS 64-17-5)

프로판-2-올 (CAS 67-63-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량 구분

인화성 액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량 구분 제조·취급 규정량

인화성 액체

400 l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해당없음.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해당없음.

생태유해성물질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등록대상 기준 화학물질 (PEC) (환경부 고시 제2015-92)

등재되지 않음.

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4류 인화성액체 알코올류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관한 사전통보승인절차 (PIC에 관한 규정, MoE 번호 2014-252, 2014년 12월 31일; 살충제에 관한 규정, RDA 번호 2014-26), 개정된 바에 따라

등재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목록명

목록 등재 (예/아니오)

한국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ECL)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2015년 1월 27일, 환경부 고시 제2016-138호까지의 개정본, 2016년 7월 13일
한국. 금지물질 (AREC "K-REACH" 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부록 4 및 5)
한국. 위험물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한국.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2015년 1월 27일)
한국. 제조 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한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한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한국. 금지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및 5)
한국.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한국. 제한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3)
한국. 제한물질 (AREC "K-REACH" 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부록 2 및 3)
한국. 유독물질 (AREC "K-REACH" 20조; 유독물질의 지정, 부록)
한국. 유독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0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 이전목록
한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환경부 고시 제2002-166호, 2002년 11월 8일)

나. 최초 작성일자

2023년 2월 14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2026년 6월 22일 (02 개정)

라. 기타

없음.

책임의 한계

Contec 는 본 정보 및 제품 또는 본 제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취급, 보관 및 폐기를 위한 안전 조건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부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정보는 현재 가능한 최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